

###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

**Q** 기업 계좌 관리계정명을 보통예금, 단기금융상품(정기예금)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,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T(특정금전신탁)의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.

**A**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구체적 금융상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증권,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
### 노동조합에 지급금액

**Q** 회사 노동조합에(노동조합계좌번호)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접대비 인지요?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?

**A**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###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

**Q**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,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. 분할하기는 하였으나, 판매처 중 온라인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, 분할 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(역)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,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.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,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. (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,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)

1.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?

2. 발행대상이 아니라면,

1) 매출 :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,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

||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

|| 2) 매입 :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,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?

A

||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

### 계열사 간 용역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

Q

|| 당사는 계열사와 용역거래를 통해 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며,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|| 1. 용역 내용 :

- 당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개선 활동(시제품 제작) 및 영업 업무 지원
- 당사에도 해당 팀들이 별도로 존재하나, 당사의 필요성에 의해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지원을 받고 있음
- 해당 계약은 별도의 이윤이 없이, 실비 정산만을 하기로 합의함
- 해당 판매 제품은 계열사(용역을 제공하는)와 전혀 상관 관계가 없음

|| 2. 질의 :

- 당사는 해당 거래가 비록 이윤이 없더라도 당사의 목적에 의하여 진행 된 계약인 관계로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.

A

|| 계열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.